

**한화생명 e재테크 저축보험 무배당
상품요약서**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한화생명 e재테크 저축보험 무배당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상품의 특이사항

Q : 한화생명 e재테크 저축보험 무배당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A : 한화생명 e재테크 저축보험 무배당은 가입 후 언제(청약철회기간 경과 후) 해지하더라도 납입보험료의 100% 이상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공시이율 저축보험입니다.

Q : 한화생명 e재테크 저축보험 무배당의 적용이율은 어떻게 되나요?

A : 한화생명 e재테크 저축보험 무배당은 공시이율(실세금리와 운용자산 수익률에 연동)을 적용하여 목돈 마련이 가능한 저축상품입니다. 또한 금리 하락시에도 최저보증이율(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연복리 1.2%, 3년 초과 5년 이내 연복리 0.75%, 5년 초과시 연복리 0.5%)을 적용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Q : 이 보험에 부가된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K1.9)은 어떤 특약인가요?

A : 계약자가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회사가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 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사업방법서, 약관 본문 및 상품설명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가입 자격요건

가. 보험의 종류

- 한화생명 e재테크 저축보험 무배당

나. 보험기간

- 10년 만기

다. 보험료 납입기간 및 납입주기

- (1) 납입기간 : 2, 3, 5, 7년납, 전기납
- (2) 납입주기 : 월납

라. 가입나이

- 만 19세 ~ 68세(단, 2년납은 만 19세 ~ 63세)

마. 가입한도

- 보험료 :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를 말하며, 보험료 납입한도는 1구좌 기준 5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로 합니다. (단, 보험료는 만원 단위로 납입합니다.)

바. 건강진단여부

한화생명 e재테크 저축보험 무배당의 경우, 기존 다른 보험상품의 가입유무, 나이,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등에 따라 건강진단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 사항

가. 상품의 구성

주 계약	한화생명 e재테크 저축보험 무배당
제도성특약	+ 비과세종합저축 세제지원특약(K2.6) + 연금전환특약Ⅱ(K10.2) 무배당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K1.9) +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특약(K3.6) + 표준하체인수특약(K3.7)

나.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금부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아래 내용은 가입하신 상품이 보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요약 정리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약관본문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주계약

(기준 : 1구좌)

급부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만기보험금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경우	계약자적립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사유발생시점의 계약자적립액 + 보험료의 1배

- 주) 1. '계약자적립액'이라 함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합니다.
 3. 이 보험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2%, 3년 초과 5년 이내에는 연복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4.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 연금전환특약Ⅱ(K10.2) 무배당

급부명칭	지 급 내 용	
연금	1. 종신연금형	
	가. 일반형	
	지급사유	금 액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피보험자가 생존한 기간동안(10년보증, 20년보증)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액을 분할계산하여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
	나. 초기집중형	
	(1) 10년보증지급	
	지급사유	금 액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보증지급기간 동안은 11차년도 이후 지급되는 연금액의 100%가 추가로 지급되도록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10년 보증지급)
	(2) 20년보증지급	
	지급사유	금 액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보증지급기간 동안은 21차년도 이후 지급되는 연금액의 100%가 추가로 지급되도록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20년 보증지급)	
2. 확정기간연금형		
지급사유	금 액	
연금개시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확정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 분할 지급 되도록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액을 분할계산하여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	
3. 상속연금형		
지급사유	금 액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특약의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 상당액」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하여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단,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이 특약의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지급)	

주) 1. 계약자적립액은 전환신청일부터 전환한 보험료를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됩니다.

2. 이 특약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이 특약의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2%, 3년 초과 5년 이내에는 연복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3. 연금액의 계산은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이 특약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4. 초기집중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동안 보증지급기간 이후 지급되는 연금액의 100%가 추가로 지급되도록 연금액이 계산되나, 연금개시후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액 및 보증지급기간 이후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5.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6.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피보험자 사망시 이 특약의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이란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연금 발생분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7.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한 같습니다.
8.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9.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다. 일반적인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 보험당사자간에 의한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제한

다음의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다음의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 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사기 등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 (2) (1)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납입면제가 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단체보험의 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2)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계약전 알릴의무 관련사항

- (1)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2)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 효과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보험료 산출기초 및 공시이율

가. 보장부분 적용이율

Q :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란 무엇인가요?

A :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 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을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장부분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Q : 이 상품에 적용한 보장부분 적용이율은 얼마입니까?

A : 한화생명 e재테크 저축보험 무배당의 보장부분에 사용한 적용이율은 연복리 2.35%입니다. 다만, 동 이율은 계약자적립액 및 해약환급금을 보증하는 이율은 아닙니다.

나. 적립부분 적용이율(공시이율)

적립부분 적용이율(공시이율)이란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가 내는 납입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적립해 나가는데, 이 계약자적립액을 부리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납입하신 보험료 중 일부는 보장 및 보험회사 운용경비로 사용되며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만이 적립됩니다.

한화생명 e재테크 저축보험 무배당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회사채 수익률, 국고채 수익률, 통화안정증권 수익률, 양도성예금증서 유통수익률 등)를 가중평균을 통해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을 토대로, 장래운용수익률과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정한 공시이율에 연동되는 상품입니다.

2025. 4월 현재 공시이율은 연복리 2.35%이며, 공시이율이 변동될 경우 이 상품의 적립부분 적용이율도 변동됩니다.

■ 공시이율 산출방법 요약

이 상품에 적용하는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합니다.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홈페이지 상품공시실에서 한화생명 e재테크 저축보험 무배당의 사업방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시기준이율 산출방법

$$= \text{운용자산이익률} \times 60\% + \text{외부지표금리} \times 40\%$$

○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시중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 「통화안정증권 수익률」, 「양도성예금증서 유통수익률」을 가중이동평균하여 산출하며, 공시기준이율 적용시점의 전전월말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다. 최저보증이율

최저보증이율은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여도 회사에서 보증해드리는 적용이율의 최저한도로서 한화생명 e재테크 저축보험 무배당에 적용된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2%, 3년 초과 5년 이내에는 연복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입니다.

라. 적용위험률

Q : 적용위험률이란 무엇인가요?

A :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 무배당 예정 경험 사망률

구분	남자	여자
20세	0.00032	0.00020
40세	0.00085	0.00050
60세	0.00377	0.00150

마.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Q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무엇인가요?

A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5.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계약자 배당은 배당 상품에 한하여 실시를 하며, 무배당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한화생명 e재테크 저축보험 무배당은 무배당상품으로서 계약자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6.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가.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등 안내

Q :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뭔가요?

A :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비용(해약공제금액 포함)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써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 해약환급금 및 계약자적립액 예시

■ 최저보증이율 가정시

- 기준 : 주계약, 40세, 10년만기, 전기납, 월납, 보험료 30만원, 단위 : 원, %

경과 기간	납입 보험료	남자				여자			
		해약 환급금	환급률	계약자 적립액	적립률	해약 환급금	환급률	계약자 적립액	적립률
3개월	900,000	901,513	100.1%	901,513	100.1%	901,535	100.1%	901,513	100.1%
6개월	1,800,000	1,804,476	100.2%	1,804,476	100.2%	1,804,509	100.2%	1,804,476	100.2%
9개월	2,700,000	2,708,183	100.3%	2,708,183	100.3%	2,708,222	100.3%	2,708,183	100.3%
1년	3,600,000	3,612,273	100.3%	3,612,273	100.3%	3,612,315	100.3%	3,612,273	100.3%
2년	7,200,000	7,229,850	100.4%	7,229,850	100.4%	7,229,895	100.4%	7,229,850	100.4%
3년	10,800,000	10,848,237	100.4%	10,848,237	100.4%	10,848,295	100.4%	10,848,237	100.4%
4년	14,400,000	14,442,450	100.2%	14,442,450	100.2%	14,442,499	100.2%	14,442,450	100.2%
5년	18,000,000	18,057,133	100.3%	18,057,133	100.3%	18,057,257	100.3%	18,057,133	100.3%
6년	21,600,000	21,647,017	100.2%	21,647,017	100.2%	21,647,222	100.2%	21,647,017	100.2%
7년	25,200,000	25,255,282	100.2%	25,255,282	100.2%	25,255,531	100.2%	25,255,282	100.2%
8년	28,800,000	28,873,528	100.2%	28,873,528	100.2%	28,873,829	100.2%	28,873,528	100.2%
9년	32,400,000	32,497,222	100.3%	32,497,222	100.3%	32,497,552	100.3%	32,497,222	100.3%
10년	36,000,000	36,123,848	100.3%	36,123,848	100.3%	36,124,193	100.3%	36,123,848	100.3%

■ 연복리A 2.35% 가정시

- 기준 : 주계약, 40세, 10년만기, 전기납, 월납, 보험료 30만원, 단위 : 원, %

경과 기간	납입 보험료	남자				여자			
		계약 환급금	환급률	계약자 적립액	적립률	계약 환급금	환급률	계약자 적립액	적립률
3개월	900,000	902,998	100.3%	902,998	100.3%	903,020	100.3%	903,020	100.3%
6개월	1,800,000	1,808,803	100.4%	1,808,803	100.4%	1,808,837	100.4%	1,808,837	100.4%
9개월	2,700,000	2,716,055	100.5%	2,716,055	100.5%	2,716,094	100.5%	2,716,094	100.5%
1년	3,600,000	3,624,051	100.6%	3,624,051	100.6%	3,624,094	100.6%	3,624,094	100.6%
2년	7,200,000	7,262,513	100.8%	7,262,513	100.8%	7,262,584	100.8%	7,262,584	100.8%
3년	10,800,000	10,940,665	101.3%	10,940,665	101.3%	10,940,787	101.3%	10,940,787	101.3%
4년	14,400,000	14,675,611	101.9%	14,675,611	101.9%	14,675,840	101.9%	14,675,840	101.9%
5년	18,000,000	18,498,122	102.7%	18,498,122	102.7%	18,498,502	102.7%	18,498,502	102.7%
6년	21,600,000	22,410,425	103.7%	22,410,425	103.7%	22,410,996	103.7%	22,410,996	103.7%
7년	25,200,000	26,414,631	104.8%	26,414,631	104.8%	26,415,398	104.8%	26,415,398	104.8%
8년	28,800,000	30,512,899	105.9%	30,512,899	105.9%	30,513,903	105.9%	30,513,903	105.9%
9년	32,400,000	34,707,477	107.1%	34,707,477	107.1%	34,708,723	107.1%	34,708,723	107.1%
10년	36,000,000	39,000,591	108.3%	39,000,591	108.3%	39,002,084	108.3%	39,002,084	108.3%

■ 연복리 B 2.35% 가정시

- 기준 : 주계약, 40세, 10년만기, 전기납, 월납, 보험료 30만원, 단위 : 원, %

경과 기간	납입 보험료	남자				여자			
		계약 환급금	환급률	계약자 적립액	적립률	계약 환급금	환급률	계약자 적립액	적립률
3개월	900,000	902,998	100.3%	902,998	100.3%	903,020	100.3%	903,020	100.3%
6개월	1,800,000	1,808,803	100.4%	1,808,803	100.4%	1,808,837	100.4%	1,808,837	100.4%
9개월	2,700,000	2,716,055	100.5%	2,716,055	100.5%	2,716,094	100.5%	2,716,094	100.5%
1년	3,600,000	3,624,051	100.6%	3,624,051	100.6%	3,624,094	100.6%	3,624,094	100.6%
2년	7,200,000	7,262,513	100.8%	7,262,513	100.8%	7,262,584	100.8%	7,262,584	100.8%
3년	10,800,000	10,940,665	101.3%	10,940,665	101.3%	10,940,787	101.3%	10,940,787	101.3%
4년	14,400,000	14,675,611	101.9%	14,675,611	101.9%	14,675,840	101.9%	14,675,840	101.9%
5년	18,000,000	18,498,122	102.7%	18,498,122	102.7%	18,498,502	102.7%	18,498,502	102.7%
6년	21,600,000	22,410,425	103.7%	22,410,425	103.7%	22,410,996	103.7%	22,410,996	103.7%
7년	25,200,000	26,414,631	104.8%	26,414,631	104.8%	26,415,398	104.8%	26,415,398	104.8%
8년	28,800,000	30,512,899	105.9%	30,512,899	105.9%	30,513,903	105.9%	30,513,903	105.9%
9년	32,400,000	34,707,477	107.1%	34,707,477	107.1%	34,708,723	107.1%	34,708,723	107.1%
10년	36,000,000	39,000,591	108.3%	39,000,591	108.3%	39,002,084	108.3%	39,002,084	108.3%

주) 1. 상기 계약환급금은 각각 최저보증이율(3년 이내 연복리 1.2%, 3년 초과 5년 이내 연복리 0.75%, 5년 초과시 연복리 0.5%), 연복리A 2.35%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평균공시이율 2.75%와 공시이율(저축), 2.35%(2025년 4월 현재) 중 작은 이율>, 연복리B 2.35% <공시이율(저축) 2025년 4월 현재 2.35%>를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매월 계약해당일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 공시이율이 변경된 경우(매 1개월마다 변동)

2.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이 상품에 적용되는 평균공시이율은 2.75%입니다.

3. 상기 예시된 환급률은 경과기간별로 각 시점에서의 계약환급금을 그 시점까지 납입한 납입보험료로 나눈 비율입니다.

4.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5. 만기시점의 계약환급금은 만기보험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7.

모집수수료율

Q : 모집수수료란 무엇인가요?
A : 모집수수료란 보험회사가 내부수수료 규정에 따라 보험모집인(보험모집자)에게 보험판매, 계약관리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 해당사항 없음.

8.

공제금액 공시에 대한 사항

가. 기본비용 및 수수료

(기준: 남자 40세, 보험료 30만원, 10년만기, 전기납, 월납)

경과기간	~10년
보험관계비용(%)	최소 0.01 ~ 최대 3.82

구 분	목 적	시 기	비 용
보험관계비용	계약체결비용	매월	10년 미만 : 경과이자의 5% (최대 7,200원)
	계약관리비용	매월	10년 미만 : 경과이자의 15% (최대 6,600원)
	위험보험료	매월	0.007% ~ 0.013% (21원 ~ 39원)
해약공제	해지에 따른 패널티	해지시	해당없음

주) 경과이자 : 매월 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액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

나. 해약공제액

경과시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이상
해약공제금액	0만원						
해약공제비율	0.0%	0.0%	0.0%	0.0%	0.0%	0.0%	0.0%

주1) 해약공제금액은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지시 공제되는 금액

주2) 해약공제비율 = $\frac{\text{해약공제금액}}{\text{이미 납입한 주계약 기본보험료}}$

다. 추가비용 및 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